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가단5050651 판결 [보증금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인터파크

피 고 한국콘텐츠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6. 4. 28.

판결 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39,726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2.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주)케이팩스(이하 '케이팩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케이팩스가 제작하는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의 제작을 위하여 5억 원을 선급금(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케이팩스는 위 드라마가 종영되는 날짜인 2015. 2. 3. 기준으로, 영업일 7일 이내에 1차 정산금으로 선급금 전액과 수익을 현금으로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드라마 선급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5. 케이팩스에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케이팩스는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계약자 케이팩스, 피공제자 원고, 보증금액 5억 원, 보증기간 2014. 12. 1. ~ 2015. 3. 30.까지로 된 이행지급보증증권을 발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공제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한다'(제9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 드라마 종영 후, 케이팩스는 2015. 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투자금 상환과 관련한 통보를 하였다.

○ 2015. 3. 3. : 투자수익금 2,000만 원

○ 2015. 3. 20. : 투자수익금 3,000만 원, 투자원금 5억 원

라. 케이팩스는 2015. 3. 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3. 23. 나머지 투자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아래와 같이 상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 2015. 4. 30. : 투자수익금 750만 원

○ 2015. 5. 31. : 투자수익금 750만 원

○ 2015. 6. 30. : 투자수익금 750만 원

○ 2015. 7. 31. : 투자수익금 750만 원, 투자원금 5억 원

마. 한편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 대하여 선급금 보증금액 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2015. 6. 29. 재차 선급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를 2015. 7. 10.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급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케이팩스로부터 선금금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행지급보증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선금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 1. 4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선금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6,739,726원(선금금 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의 선금금 청구일인 2015. 4. 22. 또는 2014. 6. 29.부터 피고가 선금금의 액수에 관한 조사를 마칠 수 있는 적절한 기한으로서 원고가 지정한 2015. 7. 10.의 다음 날인 2015. 7. 11.부터 선금금 4억 8,000만 원의 지급 전 날인 2015. 9.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 26,739,726원 및 그중 나머지 선금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2.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케이팩스로부터 2015. 3. 3.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선금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선금금은 전액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케이팩스가 2015. 3. 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케이팩스의 통장에 '선금금 지급'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이팩스는 이를 선금금으로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로서는 케이팩스로부터 위 상환통보내용과 달리 위 2,000만 원이 선금금의 반환이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2015.2. 27.자 케이팩스의 상환통보에 따라 이를 수익금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고, 2015.3. 23. 케이팩스로부터 2015. 3. 3.자 지급이 수익금이라는 취지의 상환통보를 다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5. 3. 3. 지급된 2,000만 원은 투자 수익금에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케이팩스가 위 2,000만 원을 투자 수익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케이팩스는 "선금금 전액과 수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금금을 먼저 반환하고 다음에 수익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는 변제충당합의는 효력이 없어 이해관계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조항이 선금금을 반드시 먼저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 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케이팩스가 원고에게 선급금이 아닌 수익금을 먼저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임대호